투자위험등급: 1등급 [매우 높은 위험]

베어링자산운용(주)는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1 등급(매우 높은 위험)에서 5 등급(매우 낮은 위험)까지 투자위험등급을 5 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류기준에 따른 투자회사의 위험등급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신 후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간이투자설명서

이 투자설명서는 <u>베어링 가치형 증권 투자신탁(주식)</u>에 대한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한 요약 정보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u>베어링 가치형 증권</u> <u>투자신탁(주식)</u>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증권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 베어링 가치형 증권 투자신탁(주식)

2. 집합투자기구 분류 : 투자신탁, 증권(주식형), 개방형(중도환매가능), 추가형, 종류형

3. 집합투자업자 명칭 : 베어링자산운용주식회사 (02-3788-0500)

4. 판 매 회 사: 각 판매회사 본•지점

[판매회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집합투자업자(www.barings.com/ko) 및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작성 기준일: 2013.11.20

6.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2013.11.29

7.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1조좌

8. 모집(매출) 기간(판매기간): 일괄신고서를 제출하는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 모집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할 수 있습니다.

9. 존 속 기 간 : 별도로 정해진 신탁기간은 없음

10.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 베어링자산운용㈜, 금융위원회, 각 판매회사 영업점

※이 투자신탁은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서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기재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숭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 1. 투자판단시 투자신탁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를 참고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간이투자설명 서 대신 투자설명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4.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5.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 보험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 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6.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공사가 보호하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 7.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금액 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 동 펀드의 등록신청서를 포함한 일괄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간이 및 예비 포함)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국내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 및 공모주 중 전통적인 기본적 분석과 계량모형을 이용한 기업의 내재가치 및 성장 잠재력분석에 근거하여 구성한 업종별 저평가 가치주 중심의 포트폴리오에 투자하고, 장기적인 시장 전망에 따른 능동적인 포트폴리오 변화를 통해 벤치마크 대비 장기적, 누적적으로 초과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2.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1) 기본 운용전략

가. 운용전략

이 투자신탁은 전통적인 기본적 분석과 더불어 계량 모형을 이용한 기업의 내재가치 및 성장잠재력 분석에 근거하여 국내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 및 공모주 중 업종별 저평가 가치주를 중심으 로 적정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장기적인 시장전망에 따라 능동적으로 포트폴리오를 변화시켜 수익 률 극대화를 추구할 것입니다.

국내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 및 공모주 중 업종별 저평가 가치주의 선정은 집합투자업자의 밸류에이션 모델을 통해 발굴된 재무적 안정성과 성장성 및 가치가 확보된 Buying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 중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정합니다. 또한 장기 자산운용의 특성을 감안하여 주식투자 가능비중의 80%이상을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극단적이고 빈번한 자산배분 전략은 지양합니다.

전략적 차원의 자산배분은 매월 집합투자업자의 자산배분위원회에 의해 결정되며 재무 템플릿 (Financial Templetes) 등을 이용한 기업분석과 기업탐방을 바탕으로 종목 교체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입니다.



- * PBR(Price on Bookvalue Ratio, 주가순자산비율): 주가와 1주당 순자산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주가를 1주당 순자산으로 나누어서 구함
- * PER(Price Earnings Ratio, 주가수익률): 주가를 1주당 세후순이익으로 나눈 것으로 1주당 세후순이익이 주가에 어떻게 반영 되어 있는가를 나타냄. 과거와 현재, 유사종목들간의 세후순이익과 주가를 비교, PER가 낮을수록 상대적으로 순이익에 비해 주가가 낮게 평가되어 있음을 의미
- * PSR(Price Sales Ratio, 주가매출액비율) 주가를 주당매출액으로 나누어 구함. 기업의 성장성에 주안점을 두고서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주식을 개발하는데 이용되는 투자지표로 주가매출액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기업일수록 성장잠재력이 큰 기업임을 의미
- * EV(Enterprise Value, 총 기업가치) 기업 매수자가 기업을 매수할 때 지불해야 하는 금액을 뜻하며, 주식 시가 총액(시장에서 형성된 주식가격에 그 주식 수를 곱한 금액)에 순부채(총차입금 현금예금) 를 더한 것
- * EBITDA(Earnings Before Interest, Tax, Depreciation and Amortization): 기업이 영업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현금창출 능력을 나타내는 수익성 지표, 이자비용, 법인세, 감가상각비를 공제하기 이전의 이익으로, 편의상 영업이익과 감가상각비를 더해서 구함

집합투자업자는 본 투자전략을 통하여 이 투자신탁의 수익률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나,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이 반드시 수행되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나. 위험 관리 전략

주식 최대편입비율에 맞춰 주식에 투자함을 원칙으로 하며, 극단적이고, 빈번한 자산배분 전략은 지양

그러나 이 투자신탁의 위험관리가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다. 비교지수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신탁 재산의 70% 이상을 주식에 투자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운용 전략에 의한 결과와 시장수익률과의 공정한 비교를 위해 아래의 비교지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상황 및 투자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지수의 등장에 따라 이 비교지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비교지수가 변경될 경우 법령에서 정한 절차(수시공시 등)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비교지수: KOSPI 100%]

'KOSPI' 지수 설명

KOSPI(Korea Composite Stock Price Index)는 1980 년 1 월 4 일 당시 한국의 유가증권 시장에서 거래되는 종목 전체의 시가총액의 합을 100으로 하여 현재시점의 시가총액이 얼마인가를 나타냅니다. 지수는 주가의 변화만을 반영해야 하므로 유무상 증자 등 주식수의 증감으로 발생하는 변동은 제거하는 방식으로 매일 한국증권전산(KOSCOM)에서 제공됩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

| 투자대상 | 투자비율 (자산총액대비) | 투자대상 및 비율 세부설명 |
|------|-----------------------------------|---|
| 국내주식 | 60%이상 (가치주에의 투자 50% 이 상) | 법 제 4 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및 법 제 4 조제 8 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 예탁증권(법 제 9 조제 15 항제 3 호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 등에 한 |

| | | 한다)(이하 주식이라 한다) 가. "가치주"란 위에서 정의된"주식" 중 자산가치 및 수익 가치 대비 밸류에이션이 업종평균 이하이거나 시장전체대 비 낮은 주식을 의미 |
|--------------------|--|--|
| 국공채 | 40%이하 |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 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 다)(이하 "국공채"라 한다) |
| 어음 | 40%이하 |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 (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신용평가등급이 A3- 이상이 어야 한다. 이하 "어음"이라 한다) |
| 금리스왑거래 | - | 거래시점에서 교환하는 약정이자의 산출근거가 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의 총액이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 총액의 100% 이하가 되도록 한다. |
| 집합투자증권 | 5% 이하 (상장지수집합 투자기구의 집 합투자증권에 대해서는 30% 이하) |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법 제9조 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이하 "집합투자증권등" 이라 한다) |
| 증권의 대여 | _ |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로 한다. |
| 장내파생상품 | 위탁증거금의 합계액이 투자 신탁 자산총액 의 15% 이하 |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파생상품으로서 주식•채권이나 주식•채권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 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이하 "장내파생상품"이 라 한다) |
| 환매조건부 매도 | - |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경우를 말하며, 환매조건부매도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환매조건부대상증권총액의 50% 이하로 한다. |
| 증권의 차입 | 20% 이하 | _ |
| 신탁업자 고유재산 과의 거래 | - | 법 시행령 제26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 과의 거래 |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음

- 1. 단기대출(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를 말함)
- 2.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함)

나. 투자제한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구 분 | 내 용 | 적용 제 외 |
|-------------------------|--|-----------|
| 단기대출및 환매조건부 매수 투자 |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 84 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음가. 법 제 83 조제 4 항에 따른 단기대출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매수하는 경우) | |

| 동일종목 투자 |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법 시행령 제80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예금·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債權을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증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봄.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음 가.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나.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때매·증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 법 시행령제 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처원, 법 시행령제 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다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학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학국자를 등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당권을 말한다)에 투자신략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다.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의 시가총액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 비중까지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다음 1개월간 점용 | 최초설정 일로부터 1 간 |
|-------------------|---|------------------------|
| 동일회사 등이 발행한 증권 |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
| | 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 총액을 뺀 가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
| |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최초설정 |
| 파생상품 매매 | 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위험평가액을 포함한 투자신탁재산 총 위험 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를 초과하는 행위 | 일로부터 1 개월간 |
| |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 평가액이 이 투자회사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
| | 법 시행령 제80조제5항에서 정하는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 | |

| 계열회사 발행증권 | 법 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 |
|-----------|---|
| 후순위 채권 | 그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후순위 채권에 투자하는 행위 |

[투자제한 및 한도의 예외]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 투자대상 ①내지 ⑤의 규정은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 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회계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계약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가. 투자대상 ①내지 ⑤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가. 투자대상 ⑥내지 ⑩의 규정, 나. 투자 제한 ②내지 ④의 규정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 1.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 2.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 3.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 4.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 5.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 투자제한 ②, ④의 규정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1개월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주) 투자제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법령 및 정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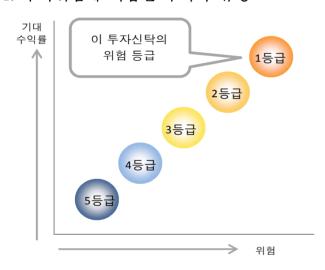
3. 주요 투자위험

| 구 분 |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
|---------------------|---|
| 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위험 | 이 투자신탁은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 원리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 주식 등 가격변동위 험 |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등에 주로 투자하기 때문에, 동 주식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손실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국내의 지정학적위험 및 투자 증권의 가치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관련 증권시장의 법령 및 제도의급격한 변화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
| 금리변동위 험 | 투자적격등급 이상의 신용등급을 가진 채무증권등에 투자할 예정이나, 투자적격등급의 채무증권등도 또한 리스크가 존재하고 채무증권등의 금리변동에 따라 채무증권등의 가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무증권등의 가격 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무증권등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

| | 손실 또는 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 환매연기위 험 | 신탁재산의 운용에 있어 예상치 못한 정치, 경제상황 및 정부의 조치, 세제의 변경 등에 따라 신탁재산 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환매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되는 사유에 대해서는 본 투자설명서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의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을 참고하시기바랍니다. |
| 집합투자기 |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또는 투자신탁 |
| 구 | 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
| 해지(해산) |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등의 사유로 투자자의 동의 없이 투자신 |
| 의 위험 | 탁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기타 다른 투자위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이 집합투자기구는 자산총액의 80% 이상을 국내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 및 공모주 중 저평가 우량주에 투자하는 주식형 투자신탁으로서 채권 등에 비하여 가격변동성이 큰 위험이 있으므로 투자위험등급 5등급 중 1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매우 높은 위험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주식시장의 하락으로 인해 채권형 및 혼합형 투자신탁 보다 원본손실의 가능성이 훨씬 높은 위험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국내 중권시장에 상장된 주식 등에 투자하여 투자수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5. 운용 전문인력

| 성명 | 출생 년도 | 직위 | 운용현황(2013.1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수 | 11.20)현재 다른 운용 자산 규모 | 주요운용경력 및 이력 |
|-----|----------|------------|-----------------------------------|----------------------------|---|
| 최상현 | 1970 | 부책임 운용역 | 8개(팀운용) | 1, 695억 (팀운용) | 서울대학교 경제학 학사 한가람 투자자문 한화자산운용(구. 푸르덴셜) 베어링자산운용㈜ 주식운용팀 (2013.02~) |
| 신광선 | 1973 | 부책임 운용역 | 8개(팀운용) | 1,695억 (팀운용) |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우리자산운용 신한 BNP 파리바 자산운용 베어링자산운용㈜ 주식운용팀 (2013.11~) |

주1) 운용 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중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없음 (2013.11.20기준)

주2)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수 및 규모를 산정할 때 모자형구조의 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합니다

주3)운용전문인력이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은 협회 홈페이지 (dis,kofia.or,kr)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투자실적 추이(연도별 수익률)

| 연도 | 최근1년차 | 최근2년차 | 최근3년차 | 최근4년차 | 최근5년차 |
|------------|----------------------------|----------------------------|----------------------------|----------------------------|----------------------------|
| | 2012.10.17 ~ 2013.10.16 | 2011.10.17 ~ 2012.10.16 | 2010.10.17 ~ 2011.10.16 | 2009.10.17 ~ 2010.10.16 | 2008.10.17 ~ 2009.10.16 |
| 투자신탁 전체 | 3.34 | 9.01 | 6.82 | 22.24 | 33.31 |
| Class C-A1 | 2.97 | 8.58 | 6.64 | 22.22 | 33.27 |
| Class C-C1 | 2.86 | 8.27 | 6.12 | 21.45 | 32.31 |
| Class C-C2 | 3.97 | 9.64 | -6.57 | 0.00 | -24.74 |
| Class C-CW | 3.99 | 9.65 | 7.66 | 23.39 | 34.55 |
| Class C-B | 3.25 | 8.82 | | | |
| 비교지수 | 4.79 | 5.78 | -3.52 | 15.97 | 35.14 |

- 주1) 비교지수: KOSPI 100%
- 주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집합투자기구의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 주3) 상기의 비교지수는 펀드설정 초기, 펀드운용개시일전, 펀드가 일정 규모 미만일 경우, 시장 상황 및 펀드운용전략의 변경, 새로운 참조지수의 등장 및 참조지수 정보 제공이 불완전할 경우 참조지수가 변경되거나, 일정기간 다른 지수로 교체 가능합니다.

매입•환매관련 정보

1. 보수 및 수수료

- 이 투자신탁은 운용 및 판매 등의 대가로 수수료 및 보수를 지급하게 되며, 가입자격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수 및 수수료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는 판매보수와 관련하여 집합투자증권의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부터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교부 받고 설명 받으셔야 합니다.

(1)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 スセ | 크 (c) 크 크 | 수수료율 | | | | | |
|-----|--|-------------------------------|-------------------------------|----------------------|-------|--|--|
| 종류 | 가입자격 | 선취판매수수료 | 후취판매수수료 | 환매수수료 | 전환수수료 | | |
| A1 | 선취판매수수료 징구 | 납입금액의 1% 이내 ^{주1)} | - | | - | | |
| В | 후취 판매수수료 징구 | - | 환매금액의 1% 이내 ^{주2)} | 30일 미만: 이익 금의 70% | - | | |
| C1 | 제한없음 | - | - | 30일 이상 90일 | _ | | |
| C2 | 거치식 혹은 총납입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기관투자자, 적립식 10억이상 | | | 미만: 이익금의 30% | | | |
| C-W | 판매회사의 Wrap을통해 | | | | | | |

| | 투자하는 자 등 | | | | |
|----------|------------|-----|-----|-----|-----|
| C-T | 신탁재산을 대상으로 | | | | |
| <u> </u> | 판매하는 수익증권 | | | | |
| | 부과기준 | 매입시 | 환매시 | 환매시 | 전환시 |

주1) 납입금액의 1% 이내에서 판매회사가 정하며, 판매회사가 수수료율을 달리 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적용 1일 전까지 자산운용사 및 금융투자협회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2)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 | 지급비율 (연평균가액의 %) | | | | | | |
|-------------------------------------|-----------------|-----------------|-----------|-----------|-----------|-----------|------------|
| 구 분 | Class A1 | Class C1 | Class C2 | Class C-W | Class C-T | Class B | (지급 시기) |
| 집합투자업 자 <i>보수</i> | 연 0.650% | 연 0.650% | 연 0.650% | 연 0.650% | 연 0.650% | 연 0.650% | |
| 판매회사 <i>보</i> <i>수</i> | 연 1.000% | 연 1.000% 주4) | 연 0.030% | 연 0.000% | 연 0.050% | 연 0.780% | 매3개 |
| 신탁업자 <i>보</i> <i>수</i> | 연 0.030% | 연 0.030% | 연 0.030% | 연 0.030% | 연 0.030% | 연 0.030% | 월후급 |
| 일반사무관 리 <i>보수</i> | 연 0.014% | 연 0.014% | 연 0.014% | 연 0.014% | 연 0.014% | 연 0.014% | |
| 기타비용 ¹⁾ | 연 0.0053% | 연 0.0053% | 연 0.0053% | 연 0.0053% | 연 0.0000% | 연 0.0053% | 사유발 생시 |
| 총 <i>보수</i> ·비 용비율 ²⁾ | 연 1.6993% | 연 1.6993% | 연 0.7293% | 연 0.6993% | 연 0.7486% | 연 1.4793% | - |
| 증권거래비 용 ³⁾ | 연 0.2042% | 연 0.2029% | 연 0.1889% | 연 0.2013% | 미설정 | 연 0.2008% | 사유발 생시 |

- 주1) 기타비용은 증권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경상적·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 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 으로써 2013.10.16 기준으로 최근 1년 동안의 자료를 기초로 한 비용으로 실제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한편 미설정 종류 수익증권의 기타 비용은 이 투자신탁의 기타비용으로 추정한 수치입니다.
- 주2) 총보수·비용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균잔액(보수·비용 차감 전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 주3) 증권거래비용은 2013.10.16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 외에 증권신고서 제출에 따른 발행분담금 등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4) 판매회사보수의 경우 2012.05.03~2013.05.02의 기간에는 연간 1.1875% 징구, 2013.05.03일 이후부터는 연간 1.00%를 지급합니다.

※ 1.000만원을 투자할 경우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

(단위: 원)

| 투자기간 | 1년차 | 3년차 | 5년차 | 10년차 | |
|-----------|------------|------------|--------------|--------------|--|
| Class A1 | 270,903.14 | 640,903.32 | 1,048,828.53 | 2,261,064.53 | |
| Class C1 | 212,044.61 | 668,470.64 | 1,171,680.33 | 2,667,074.34 | |
| Class C2 | 74,200.24 | 233,916.26 | 410,003.17 | 933,282.66 | |
| Class C-W | 71,125.65 | 224,223.60 | 393,014.09 | 894,610.73 | |
| Class C-T | 77,074 | 241,139 | 419,375 | 935,258 | |
| Class B | 151,065.13 | 476,232.83 | 834,730.21 | 1,900,081.00 | |

- 주1)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수료 또는 총보수•비용(기타비용 포함)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임.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후취판매수수료율 0%, 보수•비용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음.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주2) 상기 보수·비용의 예시금액은 변경전 판매회사 보수(연 1.10%)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음

2. 과세

- 가. 투자자는 투자대상으로부터 발생한 이자, 배당 및 양도차익(해외주식 매매차익 포함)에 대하여 소득세 등(개인 15.4%, 법인 14.0%)을 부담합니다.
- 나. 외국상장주식의 매매 또는 평가손실은 2010 년 1 월 1 일부터 2012 년 12 월 31 일까지 발생한 과세 이익을 한도로 집합투자기구 등으로부터의 배당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 과세이익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전 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 과세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이 투자신탁의 증권신고서 및 정식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기준가격 산정 및 매입•환매 절차

가. 기준가격 산정 및 공시

| 구분 | 내 용 |
|------|--|
| 산정방법 |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공고·게시일 전날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상당액]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순자산총액[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순자산총액])을 공고·게시일 전날의 수익증권[당해 종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1,000 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 5 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
| 공시장소 | 판매회사 영업점, 집합투자업자 (<u>www.barings.com</u> /ko), 판매회사, 한국금융 투자협회 (<u>www.kofia.or.kr</u>) 인터넷 홈페이지 |

나. 매입.환매 절차

| 구분 | 오후 3시 이전 | 오후 3시 이후 | |
|----|--|--|--|
| 매입 |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D)로부터 제 2 영업일 (D+1)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제1영업일(D) 제2영업일(D+1) 자금납입일 기준가 적용일(매입) |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D)로부터 제 3 영업일 (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제1영업일(D) (D+1) 제3영업일(D+2) 자금납입일 기준가 적용일(매입) | |
| 환매 | - 환매청구일(D)로부터 제 2 영업일(D+1)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 제 4 영업일(D+3)에 환매대금을 지급 | 환매청구일(D)로부터 제 3 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제 4 영업일(D+3)에 환매대금을 지급 | |



신탁업자, 집합투자업자 및 판매회사는 환매대금의 지급이 자금세탁방지 기타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통지 받거나 의심되는 수익자의 환매대금 지급요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베어링자산운용 ㈜의 서면 승인이 없이는 미국인을 대상으로 모집하거나 미국인에게 판매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V 요약 재무정보

(단위: 원)

| | | | (단귀: 원) |
|-------------|----------------|----------------|----------------|
| 요약재무정보 | 제 7 기 | 제 6 기 | 제 5 기 |
| | 20131016 | 20121016 | 20111016 |
| I .운용자산 | 52,471,217,991 | 75,637,085,183 | 96,164,336,152 |
| 증권 | 50,313,756,160 | 72,330,920,920 | 89,315,660,185 |
| 현금 및 예치금 | 57,461,831 | 6,164,263 | 48,675,967 |
| 기타운용자산 | 2,100,000,000 | 3,300,000,000 | 6,800,000,000 |
| II. 기타자산 | 390,017,330 | 328,635 | 5,618,541 |
| 자산총계 | 52,861,235,321 | 75,637,413,818 | 96,169,954,693 |
| II. 기타부채 | 465,214,707 | 409,877,343 | 461,463,361 |
| 부채총계 | 465,214,707 | 409,877,343 | 461,463,361 |
| I. 원본 | 50,742,011,068 | 70,408,617,840 | 96,356,080,569 |
| II. 수익조정금 | -840,609,433 | -1,438,128,045 | -3,345,172,538 |
| III. 이익잉여금 | 2,494,618,979 | 6,257,046,680 | 2,697,583,301 |
| 자본총계 | 52,396,020,614 | 75,227,536,475 | 95,708,491,332 |
| I. 운용수익 | 3,386,098,966 | 9,539,554,677 | 8,195,782,718 |
| 이자수익 | 87,279,943 | 194,749,818 | 151,205,469 |
| 배당수익 | 712,734,313 | 1,233,301,490 | 1,087,566,685 |
| 매매/평가차익(손) | 2,583,273,529 | 8,102,809,236 | 6,917,026,876 |
| 기타이익 | 2,811,181 | 8,694,133 | 39,983,688 |
| II. 운용비용 | 888,758,609 | 1,240,780,385 | 1,467,464,408 |
| 관련회사보수 | 884,195,859 | 1,234,645,525 | 1,461,465,998 |
| 기타비용 | 4,562,750 | 6,134,860 | 5,998,410 |
| III. 당기 순이익 | 2,497,340,357 | 8,298,774,292 | 6,728,318,310 |
| * 매매회전율 | 124 | 171 | 197 |
| * 매매수수료 | 133,043,779 | 282,646,787 | 369,724,270 |

주1) 매매회전율이란 주식매매의 빈번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해당 운용기간 동안 매도한 주식가액을 같은 기간 동안 평균적으로 보유한 주식가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예를 들어 1회계연도 동안의 평균적인 주식투자 규모가 100억 원이고, 주식 매도금액 또한 100억 원인 경우 매매회전율은 100%입니다.

주2) 매매회전율 변동에 관한 특이사항: 해당사항 없음

주3)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는 협회 홈페이지에 공시된 감사보고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이투자설명서 교부 및 주요내용 설명 확인서 (고객 보관용)

- ◆ 집합투자기구(펀드) 명칭 : 베어링 가치형 증권 투자신탁(주식)
- ◆ 판매회사 및 점포명 :
- ◆ 판매직원 :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 1. **간이투자설명서**를 받으셨나요? 투자자가 요청할 경우 간이투자설명서 대신 투자설명서를 받을 수 있는데 직원으로부터 이에 대한 설명을 들으셨나요?
- 2. 판매회사는 귀하의 **투자목적이나 투자경험 등에 적합한 상품**을 권유하고 그 상품에 대하여 **간이투자** 설명서를 이용하여 설명을 해야 하는데 상품설명을 받으셨는지요?
- 3. 위의 절차에 따라 권유 받은 이 상품이 귀하께 적합하다고 생각 하시나요?
- 4.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설명을 들었으며, 특히, 판매보수 및 판매수수료와 관련하여 해당 판매회사가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투자자에게 교부하고 설명해야 하는데 자료를 제공받고 설명을 들으셨나요?
- 5. 펀드상품은 기본적으로 원금손실이 가능하다는 사실과 특히,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펀드라면 불리한 상황에서의 최대손실예상금액 등을 포함하여 손익구조에 관한 설명을 들으셨나요?
- 6. 판매회사는 당해 회사의 계열회사가 운용하는 펀드를 투자 권유할 경우 계열사 펀드임을 설명하고 유사한 성격의 다른 비계열사 펀드도 함께 권유하여 투자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듣고 비계열사 펀드도 함께 권유 받으셨나요?

위 질문에 대하여 다시 한번 신중한 판단을 하신 후에 최종 투자결정을 내리셔서 귀하께서 예 측하지 못하신 손실을 입으시는 경우가 없도록 한층 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판매직원 성명: 서명)----(고객 성명

서명 또는 인)-----

간이투자설명서 교부 및 주요내용 설명 확인서 (판매회사보관용)

- ◆ 집합투자기구(펀드) 명칭 : 베어링 가치형 증권 투자신탁(주식)
- ◆ 판매회사 및 점포명 :

◆ 판매직원 :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 | _ , , _ | | <u> </u> | 10 - 2 (2) | |
|----|-----------|-----------------------|-------------------------------|---|---------------|
| | | | 고객 확인 사항 | | 고객 기재사항 |
| 1. | | | 투자자가 요청할 경우 부터 이에 대한 설명을 들 | 간이투자설명서 대신 투자설명 들으셨나요? | (받았음) |
| 2. | 직원으로부터 이 | 상품에 대하여 | 간이투자설명서를 이용 | 하여 설명을 들으셨나요? | (들었음) |
| 3. | 이 상품이 귀하의 | 부 투자목적이나 | 투자경험에 비추어 적힙 | 하다고 생각하시나요? | (적합함) |
| 4. | 당 판매회사가 | 투자자에게 지속 | | - 및 판매수수료와 관련하여 해 :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설명을 들으셨나요? | (제공받고 들었음) |
| 5. | | | | 특히,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상품 함하여 손익구조에 관한 설명을 | (들었음) |
| 6. | 을 설명하고 유/ | 나한 성격의 다 . | 른 비계열사 펀드도 함께 | 투자 권유할 경우 계열사 펀드임 권유하여 투자자가 선택할 수 펀드도 함께 권유 받으셨나요? | (들었음) |

년 월 일 고객 성명

서명 또는 (인)